

[소 방 본 부
공 무 원 교 육 원] 소 관
도 민 교 육 원

1995년 도 제 3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검 토 보 고

1995. 12.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 | |
|------------------|-----|
| 1. 개 요 | 728 |
|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728 |
| 나. 부.원별 세출예산안 규모 | 729 |
| 1) 소 방 본 부 소관 | 729 |
| 2) 공무원교육원 소관 | 730 |
| 3) 도민교육원 소관 | 731 |
| 2. 검토의견 | 732 |

1. 개요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 기정예산액 | | 증△감 | |
|----------|---------|------|---------|------|--------|------|
| | 금액 | (%) | 금액 | (%) | 금액 | (%) |
| 합계 | 611,537 | 100 | 616,510 | 100 | △4,973 | △0.8 |
| 인건비 | 42,195 | 6.9 | 43,069 | 7.0 | △874 | △2.0 |
| 물건비 | 32,757 | 5.4 | 32,692 | 5.3 | 65 | 0.2 |
| 이전경비 | 123,893 | 20.3 | 122,084 | 19.8 | 1,809 | 1.5 |
| 자본지출 | 386,261 | 63.2 | 393,545 | 63.8 | △7,284 | △1.9 |
| 용자 및 출자 | 7,678 | 1.3 | 7,678 | 1.2 | - | - |
| 보전계원 | 1,815 | 0.3 | 1,815 | 0.3 | - | - |
| 내부거래 | 8,156 | 1.3 | 6,463 | 1.0 | 1,692 | 26.2 |
| 예비비 및 기타 | 8,782 | 1.4 | 9,163 | 1.5 | △381 | △4.2 |

○ '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165억1천만원 대비 0.8%인 49억7천3백만원이 감액된 6,115억3천7백만원 규모임.

나. 부·원별 세출예산안 규모

1)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예 산 액 | | 기 정 예 산 액 | | 증 △ 감 | |
|-------------|--------|------|-----------|------|-------|------|
| | 금 액 | (%) | 금 액 | (%) | 금 액 | (%) |
| 합 계 | 20,448 | 100 | 20,518 | 100 | △30 | △0.1 |
| 인 건 비 | 10,015 | 48.9 | 10,045 | 48.9 | △30 | △0.3 |
| 물 건 비 | 5,603 | 27.3 | 5,603 | 27.3 | - | - |
| 이 전 경 비 | 550 | 2.7 | 550 | 2.7 | - | - |
| 자 본 지 출 | 4,319 | 21.1 | 4,319 | 21.1 | - | - |
| 용 자 및 출 자 | - | - | - | - | - | - |
| 보 전 재 원 | - | - | - | - | - | - |
| 내 부 거 래 | - | - | - | - | - | - |
| 예 비 비 및 기 타 | - | - | - | - | - | - |

- 소방본부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4억 8천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5억1천8백만원에 비하여 0.1%인 3천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6,115억3천7백만원에 비하여는 3.4%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2)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예 산 액 | | 기 정 예 산 액 | | 증 △ 감 | |
|----------|-------|------|-----------|------|-------|------|
| | 금 액 | (%) | 금 액 | (%) | 금 액 | (%) |
| 합 계 | 1,458 | 100 | 1,486 | 100 | △28 | △1.9 |
| 인 건 비 | 806 | 55.3 | 834 | 56.1 | △28 | △3.4 |
| 물 건 비 | 614 | 42.1 | 614 | 41.3 | - | - |
| 이 진 경 비 | 18 | 1.2 | 18 | 1.2 | - | - |
| 자 본 지 출 | 20 | 1.4 | 20 | 1.4 | - | - |
| 용자 및 출자 | - | - | - | - | - | - |
| 보 전 재 원 | - | - | - | - | - | - |
| 내 부 거 래 | - | - | - | - | - | - |
| 예비비 및 기타 | - | - | - | - | - | - |

- 공무원교육원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4억5천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억8천6백만원에 비하여 1.9%인 2천8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6,115억3천7백만원에 비하여는 0.2%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3) 도민교육원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예 산 액 | | 기 정 예 산 액 | | 증 △ 감 | |
|----------|-------|------|-----------|------|-------|------|
| | 금 액 | (%) | 금 액 | (%) | 금 액 | (%) |
| 합 계 | 1,239 | 100 | 1,257 | 100 | △18 | △1.4 |
| 인 건 비 | 645 | 52.1 | 663 | 52.7 | △18 | △2.7 |
| 물 건 비 | 431 | 34.8 | 431 | 34.3 | - | - |
| 이 전 경 비 | 90 | 7.3 | 90 | 7.2 | - | - |
| 자 본 지 출 | 73 | 5.8 | 73 | 5.8 | - | - |
| 용자 및 출자 | - | - | - | - | - | - |
| 보 진 재 원 | - | - | - | - | - | - |
| 내 부 거 래 | - | - | - | - | - | - |
| 예비비 및 기타 | - | - | - | - | - | - |

○ 도민교육원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2억 3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억5천7백만원에 비하여 1.4%인 1천8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6,115억3천7백만원에 비하여는 0.2%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2. 검토 의견

1995년도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별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5억1천8백만원에 비하여 0.1%인 3천만원이 감액된 204억8천8백만원 규모이며

-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4억8천6백만원에 비하여 1.9%인 2천8백만원이 감액된 14억5천8백만원 규모이며

- 도민교육원 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2억5천7백만원에 비하여 1.4%인 1천8백만원이 감액된 12억3천9백만원 규모로서

○ 이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기본적경비 인건비에 있어

| | |
|------------|-------------------|
| · 소방본부소관 | 3천만원 (0.1%감) |
| · 공무원교육원소관 | 2천8백만원 (1.9%감) |
| · 도민교육원소관 | 1천8백만원 (1.4%감) 으로 |

편성되어 있음.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가) 소방본부소관의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100억4천5백만원에 비하여 0.3%인 3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편성시 급여 및 상여금재원을 해당직급 기준호봉에 의한 계상분에 대해 실질 집행액의 차액발생분을 감액하게 된 것으로 불용액 발생방지

차원에 있어서의 삭감계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나) 공무원교육원소관의 인건비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8억3천4백만원에 비하여 3.4%인 2천8백만원이 감액된것은 소방본부소관 예산삭감이유와 그 내용을 같이하고 있으며

다) 도민교육원소관의 인건비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지정예산액 12억5천7백만원에 비해 2.7%인 1천8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기준예산편성시 해당직급 기준호봉에 의한 계상분에 비해 실제 집행액상의 차액 발생분으로서

기능직 1명 결원에 따른 지출사유비발생 7백5십만원과 5급과장급 자리에 6급직부 대리자 3명이 근무함으로서 발생한 차액으로 도민교육원 또한 불용액 발생방지 차원에 있어서 삭감계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